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서왕진 · 김준형
강경숙 · 한창민 · 김재원
김선민 · 이해민 · 신장식
황운하 · 박은정 · 차규근
용혜인 · 윤종오 · 백선희
손 술 · 정혜경 · 최혁진
전종덕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,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(안 제47조제6항 신설)

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10년을”을 “20년을”로 한다.

제19조(피선거권이 없는 자)

제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(정당의 후보자추천)

- ⑥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소속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
제230조제6항 중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,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,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19條(被選舉權이 없는 者) 選舉 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舉權이 없다. 1. ~ 4. (생략) 5.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<u>10년을</u> 경과하지 아니한 자(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)	제19조(피선거권이 없는 자) 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-----<u>20년을</u>----- -----
第47條(政黨의 候補者推薦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7조(정당의 후보자추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국회의원 ·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7조의 2를 위반하여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소속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</u>
제230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 ① ~ ⑤ (생략)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500만원</u> 이상 <u>3천만원</u>	제230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<u>7년</u>----- -----<u>1천만원</u>-----<u>5천만원</u>
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⑦ · ⑧ (생 략)	-----. 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